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 일부개정 과정 등으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국민불편 법령개선의견에 따른 용어수정 및 본인확인서류 추가 등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해양영토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영해기준점 표지(‘16~‘21)가 설치된 도서를 특별관리계획 및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조, 안 제19조)
- 나. 인접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다를 경우 행위제한 등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유형 중첩 시 적용 범위 관련 사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 다. 관리유형 지정 시 의견수렴 대상 민간단체를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주변 어촌계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사항 명확화(안 제13조)

- 1) 무인도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계 활동을 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 등 면허와 허가를 받은 자를 행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안 제13조제1항)
- 2) 공공목적 행위에 무인도서 주변에서 행해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해양조사 명시(안 제13조제2항)

마.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 1) 안전사고 예방·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방화·방재 시설, CCTV, 안내표지판 등 준보전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정의(안 제13조의2)
- 2) 공공시설물, 토지소유자의 농·어업 시설물·주택 등 이용가능무인도서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규정(안 제13조의3)

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 첨부서류, 허가 공고, 준공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

사. '09년에 삭제된 무인도서 관련 민간단체를 정의하는 조항(제7조)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24조)

아. 지방자치단체장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23.10.31)됨에 따라 경비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25조)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관련(안 제26조)

- 1)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해양관측시설물 제외)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
 - 2) 무인도서 실태조사(현 지방해양수산청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관측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 위임(안 제26조제2항)
- 차.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문이 변경·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화(안 제27조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11.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로 한다.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이하 “영해기준점 표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이 서로 다른 무인도서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관리유형은 각각의 무인도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까지 적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면·동에 소속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만 한한다.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해당 무인도서에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
5. 해당 무인도서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13조제2항제4호 중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조사
-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 법 제12조의2제2

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砂防)·호안(護岸)·방책(防柵)·방화(防火)시설·방재(防災)시설 등 안전시설
2. 안내판, 보안용 감시카메라(CCTV) 등 무인도서를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시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한 시설
4.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설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13조2의 공공시설물
2.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3. 탐방로, 교량,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어업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택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를 위한 가축사육 시설

제13조의4(시설물 설치 허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후단 및 법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증축·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영해기점표”를 “영해기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점표지가 설치된 도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점표지가 설치된 도서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에 따른”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물(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 제외)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시설물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제외)
- 5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제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 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시설물 중 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점표지가 설치된 도서의 점검·관리
 6. 법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중지명령
- 별표 2 중 “1.”란과 “6.”란을 삭제하고, 위반행위란 중 “2.”란을 “1.”란으로 하고 같은란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1호”로 하며, “5.”란을 “3.”란으로, “7.”란을 “6.”란으로, “8.”란을 “7.”란으로 한다.

별표 2의 “2”란, “4”란,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만원
4.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50만원
5.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법 제37조제2항제1의2호	5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200만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200만원
4.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50만원
5.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법 제37조제2항제1의 2호	50만원
6.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2호	100만원
7.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3호	5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삭 제>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 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① (생략)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해기점표의 설치 및 관리방안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이하 “영해기준점 표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생략)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이 서로 다른 무인도서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관리유형은 각각의 무인도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u>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까지 적용한다.</u>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 ----- ---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면·동에 소속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 무인도서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만 한한다.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해당 무인도서에서 「수산업

	<u>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u>
	5. 해당 무인도서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에 따른 <u>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u>	4.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행위
<신 설>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신 설>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조사
6. (생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 법 제12

<신 설>

조의2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砂防)·호안(護岸)·방책(防柵)·방화(防火)시설·방재(防災)시설 등 안전시설
2. 안내판, 보안용 감시카메라(CCTV) 등 무인도서를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시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한 시설
4.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설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13조2의 공공시설물
2.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

<신 설>

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3. 탐방로, 교량,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어업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택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를 위한 가축사육 시설

제13조의4(시설물 설치 허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후단 및 법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증축·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 관리) ① (생략)
 1. (생략)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점 표의 손실 · 망실 여부
 ② (생략)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생략)
 2.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영해기준 점 표지-----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의
 -----.
 -----.
 ④ -----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의
 -----.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는 단체의 임직원	<u>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① ~ ③ (생략)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 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u>해양수산 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위임한다.</u>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u>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 태조사</u>	1. <u>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 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물(제 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제외)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u>
<신설>	1의2. <u>법 제12조의4에 따른 시 설물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 가의 취소 및 위반행위의 정 지 또는 변경명령(제13조의2 제3호에 따른 시설물 제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u>법 제20조에 따른 중지명</u>

6. ~ 13. (생략)	<u>령(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 설물 제외)</u>
<신설>	6. ~ 13. (현행과 같음)
	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 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u>
	1. <u>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 계의 구축 및 운영</u>
	2. <u>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 태조사</u>
	3. <u>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 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 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설 물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u>
	4. <u>법 제12조의4에 따른 시설물 중 제13조의2제3호에 따른 시 설물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 가의 취소 및 위반행위의 정 지 또는 변경명령</u>
	5. <u>법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 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의 점검·관리</u>
	6. <u>법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의 2제3호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중지명령</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연 락 처	(044) 200 - 5355~6